

의안번호	제 122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한국전자기술연구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22년 10월 31일

#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

의안  
번호

122

제출연월일 : 2022년 10월 31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## 1. 제안사유

- 전국 유일의 '이차전지 소재·부품·장비 특화단지' 지정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모한 사업 선정으로 구축할 예정인 3개 센터를 동일부지 내에 집적화하기 위해
-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서 무상(만료일: '23.11.3.)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 중 일부(송대리 321-2, 321-3)를 분할하여
- 그 분할된 재산(송대리 321-4, 26,022.63㎡)을 이차전지 실증기반 집적화 부지로 사용하고자 충청북도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행정재산 용도를 폐지하고 일반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였음
-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,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
-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'한국전자기술연구원'과 공유재산 무상대부 계약을 위해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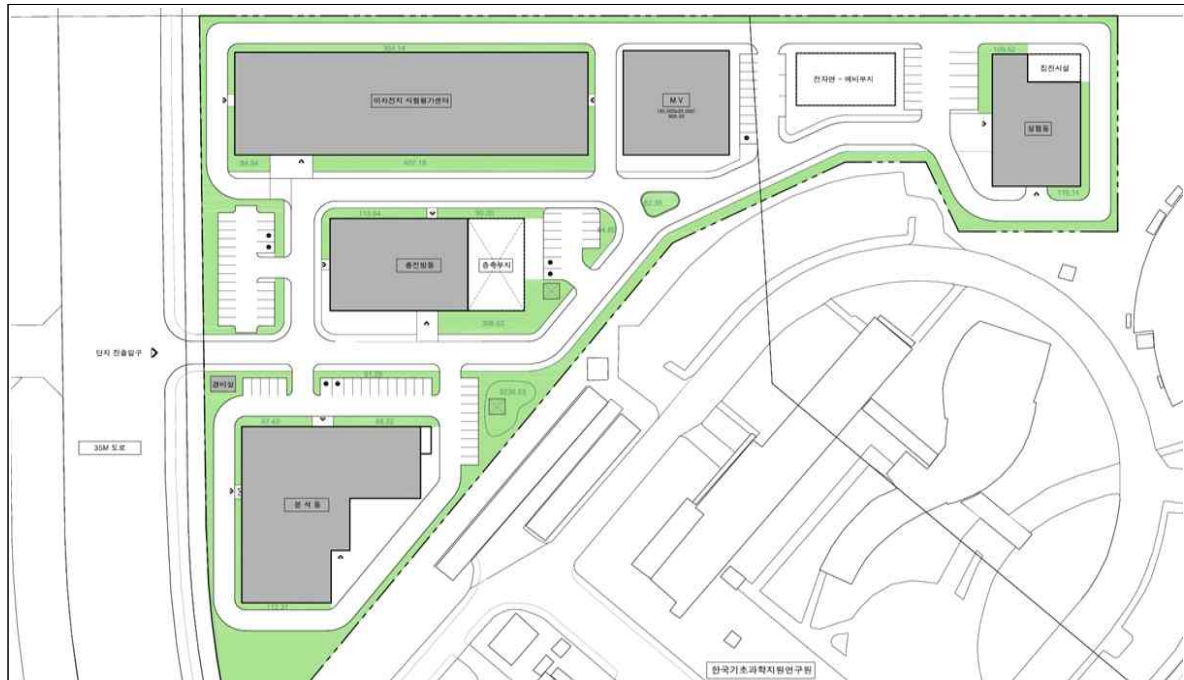
- 위치 :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송대리 321-4번지
- 면적 : 15,350.86㎡
- 용도 : 안전신뢰성기반 이차전지 소재부품 시험분석 테스트베드 구축
- 신청인 : 한국전자기술연구원
- 기간 : 20년간 대부료 면제(2022. 12. 1. ~ 2041. 11. 30.)

### 3. 참고사항

○ 집적화 부지(오창읍 송대리 321-4, 26,022.63m<sup>2</sup>) 내 구축 인프라

구분	소재·부품	셀	모듈·팩
센터명	시험분석 테스트베드	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	MV급 환경신뢰성 평가센터
사업기간	2022~2024	2021~2023	2022~2026
총사업비	453억원	297억원	130억원
사용면적	15,350.86㎡	9,194.44㎡	1,477.33㎡
주관기관	한국전자기술연구원	충북테크노파크	충북테크노파크

※ 구축 평면도



### 4. 관계법령 발취 : 붙임

-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, 제29조, 제31조, 제34조
-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, 제29조, 제30조, 제35조

## 관계 법령

### <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>

- 제13조(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)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 재산에 건물, 도랑·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. 다만,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
- 제29조(계약의 방법) ①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, 증권의 경우에는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9항에 따른 증권매출의 방법으로 하며, 이 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76조제3항을 준용한다.
  
- 제31조(대부기간) ① 일반재산의 대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
- 제34조(대부료의 감면) ①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32조에도 불구하고 그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.
  1. 생략
  2.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

## <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>

- 제9조(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) ①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 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.
  1. ~ 4. 생략
  5. 제29조제1항제13호·제23호에 해당하여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받은 자 또는 같은 항 제19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일반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해당 대부기간이 끝났을 때 그 대부받은 재산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
  
- 제29조(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) ①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.
  1. ~ 22. 생략
  23. 정부출연연구기관등 또는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
  
- 제30조(대부기간) ①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년까지 대부할 수 있다.
  1. ~ 3. 생략
  4. 정부출연연구기관등 또는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
  
- 제35조(대부료의 감면) ①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“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.
  1. ~ 3. 생략
  4. 제29조제1항제14호·제15호 또는 제23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하는 경우